

2025년 「전통시장·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」 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

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,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·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「전통시장·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」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·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·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지원 대상

- 「전통시장법」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

- 지자체(시군구)의 「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행중인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로컬브랜드창출팀

2. 지원 내용

- 지원금 4,050만원(지원금 기준 3,240만원) 이내(과업기간 120일)
 - 분담금 20%(현금10%+현물10%),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
 - 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현금분담금 5%로 경감
 - **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낙찰가액에 따라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음

※지원내용

- 공동상표 출원,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이상의 IP출원
- IP상담 및 기타 경영·기술지도 관련 교육,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
- * 과업내용은 컨설턴트, 지원대상 시장 등, 협력기관(향후선정)간 협의하여 조정

3. 접수 기간

- 4월 28일 (월) 10시 ~ 5월 16일 (금) 18시

4. 신청 방법

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pms.ripc.org>) 온라인 지원

* 회원가입,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

5. 제출 서류 (사업관리시스템 지역센터별 공고에 첨부된 양식 확인)

- 신청서(첨부양식 준수)
- 사업추진 활용계획서(첨부양식 준수)
-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(첨부양식)
-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협약서(첨부양식 준수)
- IP공정이용 협약서(선택, 첨부양식 준수)
- 자부담 납부 협약서(첨부양식 준수)
- 전통시장 입증서류(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, 전통시장 인정서 등) 1부
- 상인조직 입증서류(상인회등록증, 사업자등록(고유번호)증, 법인등기부등본, (조합의 경우)조합설립인가증,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(조합의 경우) 등) 1부
-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(해당시) 1부
-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(해당시) 1부

6. 지원 절차

접수 → 선정심의위원회(지원대상 결정, 5~6월) → 협력기관(수행사) 입찰 공고(6월)
→ 수행사 선정(7월) → 지원사업(*8월~, 최소 6~8회의 업무회의 실시)

*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(전통시장, 상점가 등)의 대면발표 없음 (서류심사로 진행)

-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(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)

7. 문의처

-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IP창출지원 담당자 (대표번호 1661-1900)
-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김진옥 전문컨설턴트 (033-552-4779, taebaek@korcham.net)

8. 기타 사항

중소벤처기업부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지원 사업(특성화 첫걸음 시장, 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, 로컬브랜드창출팀)의 경우 수혜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

- * 해당 증빙서류(협약서, 선정 공문 등)를 사업 신청 시 기타관련서류(선택 첨부파일)로 제출

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장